

신규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제2조(위원회 기능) ① 직원인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~2. 생략</p> <p>3. 정규직(전문관리직, 별정직) 및 상근계약직 전환 심사</p> <p>4.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 <p>② 위원회는 행정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위원은 기획처장, 교무처장, 입학학생처장, 연구처장, 학술정보처장, 인사팀장과 행정처장이 지명하는 팀장급이상 직원 1인, 직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5급이상 직원 1인으로 하며, 간사는 직원 인사담당자로 한다.</p>	<p>제2조(위원회 기능) ① 직원인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~2. 현행과 동일</p> <p>3. 정규직(전문관리직) 및 상근계약직 전환 심사</p> <p>4.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 <p>②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위원장은 행정처장으로 한다.</p> <p>2. 위원은 교무처장, 산학협력단장, 학술정보처장, 인사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조직단위 및 직종을 고려하여 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팀장급이상 직원 2인, 직원노동조합이 추천하는 5급이상 직원 1인, 직장발전협의회가 추천하는 5급이상 직원 1인을 임명직 위원으로 하되, 임명직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</p> <p>③ 간사는 직원 인사담당자로 한다.</p> <p>④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중임할 수 있다.</p> <p>⑤ 위원회는 필요시 관련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</p>	<p>별정직 폐지</p> <p>직원인사위원회 구성변경</p> <p>임명기준 명시</p> <p>임기 명료화 관련인의 참석 근거 마련</p>
	<p>부 칙</p> <p>1.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</p>	